

군산시 공고 제2012-1575호

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와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7월 27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「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군산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조문 인용 정비(안 제10조의2)
 - 본문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할 수 있다”로 함.
 - 2호 중(의무휴업일 지정) “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한다”를 “매월2일 이내로 시장이 별도 지정 고시한다”로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:지역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의견과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우)573-703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 888번지)

군산시청 지역경제과(전화 : 063-450-4352, 팩스 : 063-450-6391, 전자우편 : hbs1230@korea.kr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담당자 함봉석(전화:063-450-435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
2. 의무휴업일 지정 : 매월 2일 이내로 시장이 별도 지정 고시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</p> <p>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</p> <p>2. 의무휴업일 지정 : <u>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</u>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정할 수 있다.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: 매월 2일 이내 <u>로 시장이 별도 지정 고시한다.</u></p>